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5. 3 선고 2020가단508599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4. 12.

판 결 선 고 2022. 5. 3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7 지분에 관하여 2016. 10. 6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41,407,13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41,407,1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의 ‘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7 지분에 관하여’를 ‘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’로 고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춘수

별지